

안전보건공단 전국 연락처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14, 15층	02-828-1662
서울북부지도원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봉래동1가10번지) 우리빌딩 7, 8층	02-3783-8351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56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한빛로 15(가정동 491)	032-570-7261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511(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264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51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센트럴시티 2층	031-481-7542
경기동부지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쇠골로 17번길 3 소곡화관 2층	031-785-3356
부천지도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19(상3동 538-3)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2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지 26(부곡동 64-31)	051-520-0594
경남지도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7-3)	055-269-0520
경남동부지도원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석산리 1440-1) 양산노동조합청사 4층	055-371-7512
울산지도원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146(달동 615-8) 국민은행빌딩 2, 4층	052-226-0564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 20층	053-609-0563
경북동부지도원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124-4번지)	054-271-2024
경북북부지도원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64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 8, 9, 11층	062-949-8784
전남동부지도원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11
전북지도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807-8)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4층	063-240-6563
제주지도원	제주 연삼로 473(이도2동 390)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4-797-7526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042-620-5634
충남지도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11
충북지도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 3층	043-230-7116
본부 서비스업재해예방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34-4)	032-510-0647



요양보호사

보건 및 사회복지업 사고사례 만화집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 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통해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입니다.



마음으로 전하는 안전보건 서비스 **서비스업 안전** ^{+(터하기) 사업}

안전터하기
사업 소개

안전^{+(터하기)} 란

서비스업 사업장과 생활주변에 안전을 더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자는 의미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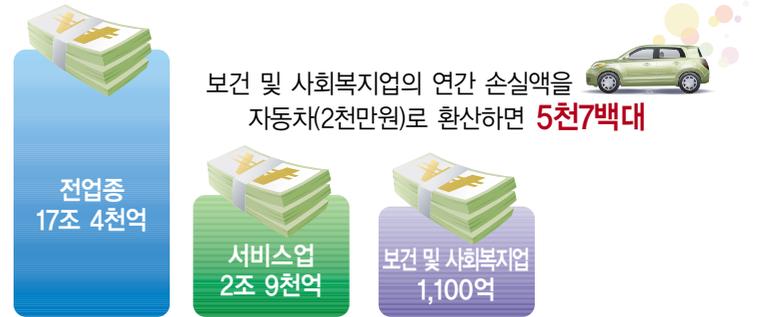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재해예방OPL(One Point
Lesson), 스티커 등과 같
은 콘텐츠를 전달해 주는 자
원봉사 서비스입니다.

- ▶ 2012년 30만 개의 서비스업 사업장을
500명의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찾아
갑니다.
- ▶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공단이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약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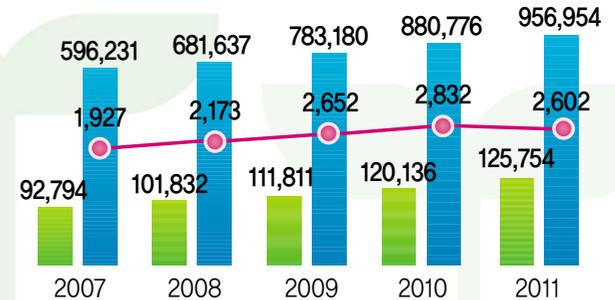
당신의 안전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손실액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사고자 수 매년 200여명씩 지속증가

- 사업장,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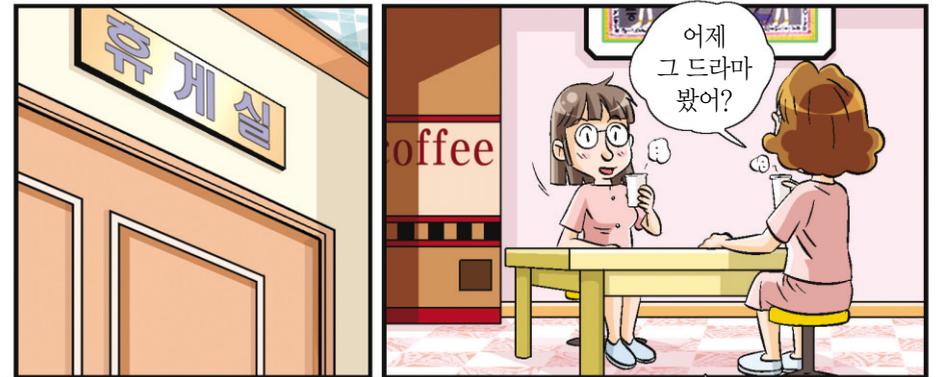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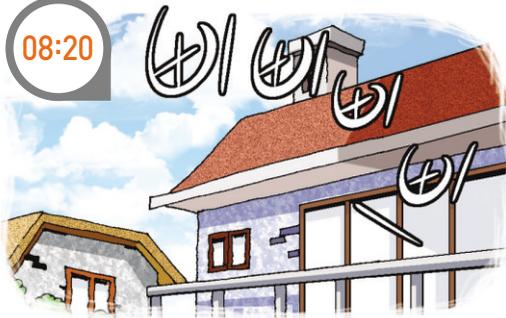
■ 사업장 수
■ 근로자 수
■ 재해자 수

- 사업장 수 연평균 7,000여개소 증가
- 근로자 수 연평균 72,000여명 증가



요양보호사의 24시간

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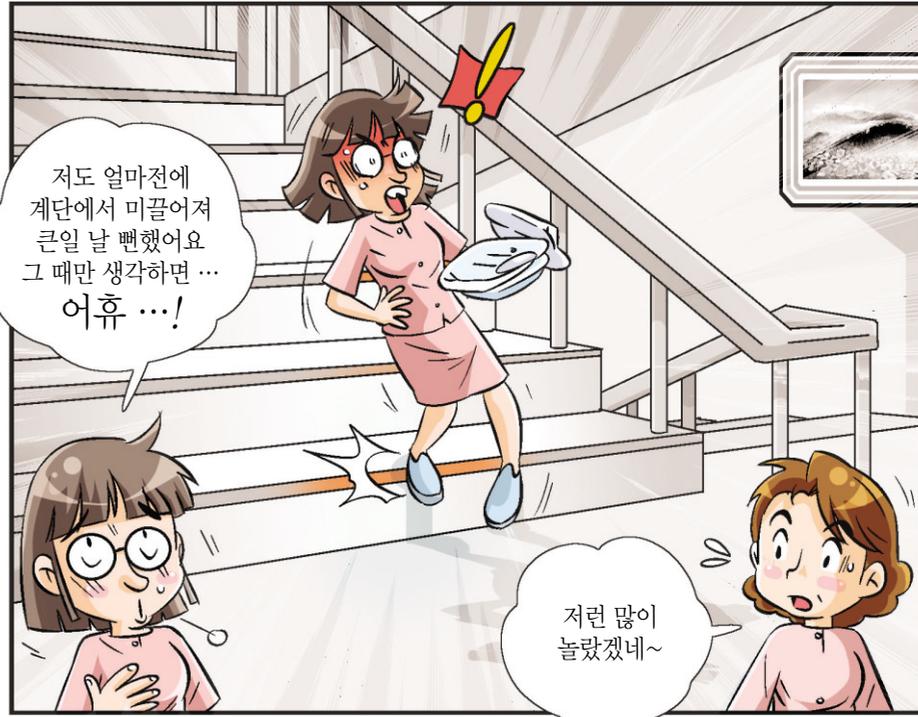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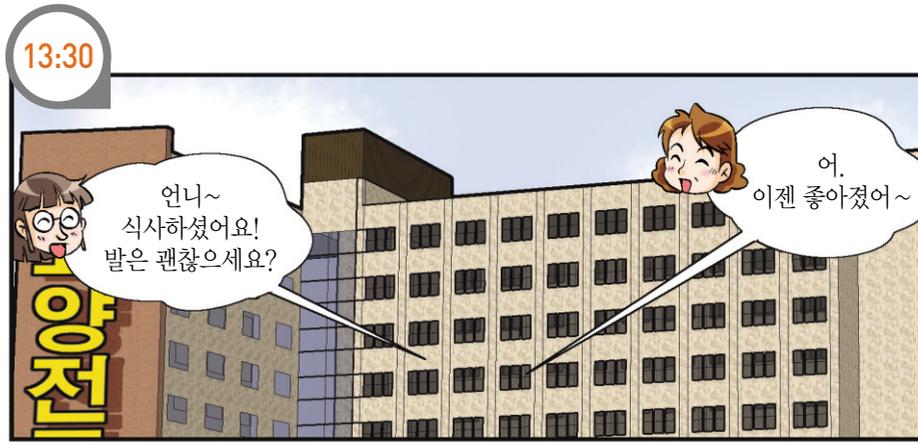
끼임

환자용 침대 바퀴에 발가락이 끼임

환자용 침대를 동료와 함께 침대를 밀고 가다 침대 바퀴에 발가락이 끼어 부상 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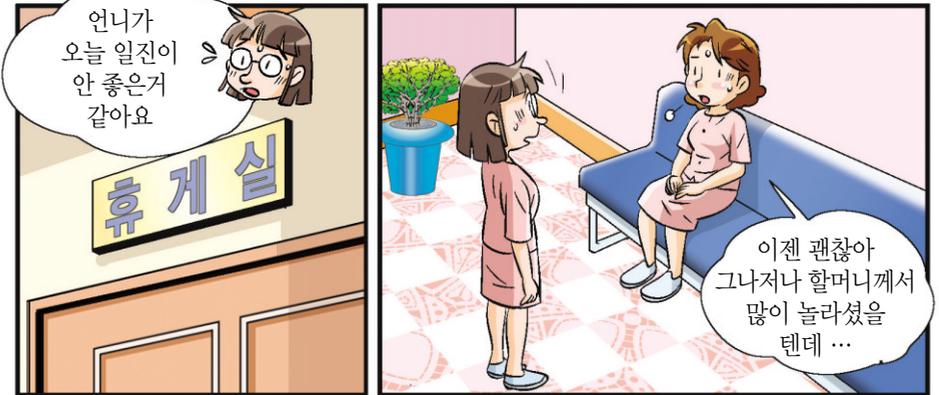


- 사고예방 대책**
- ▶ 환자 이송 시 통로의 확보
 - ▶ 환자 이송 시 대화, 잡담 등 금지
 - ▶ 사고사례 교육 실시



근골격계질환 환자를 침대 위로 올리려다 허리 부상

요양원에서 침상에 있는 오른쪽 편마비 어르신을 침대 위로 올리려 힘을 주다 심한 통증과 함께 허리를 삐끗하여 부상 당함



사고예방 대책

- ▶ 환자를 부축할 때, 허리의 힘보다는 다리의 힘을 이용
- ▶ 환자를 부축할 경우 도움을 받아 2인 작업
- ▶ 환자부축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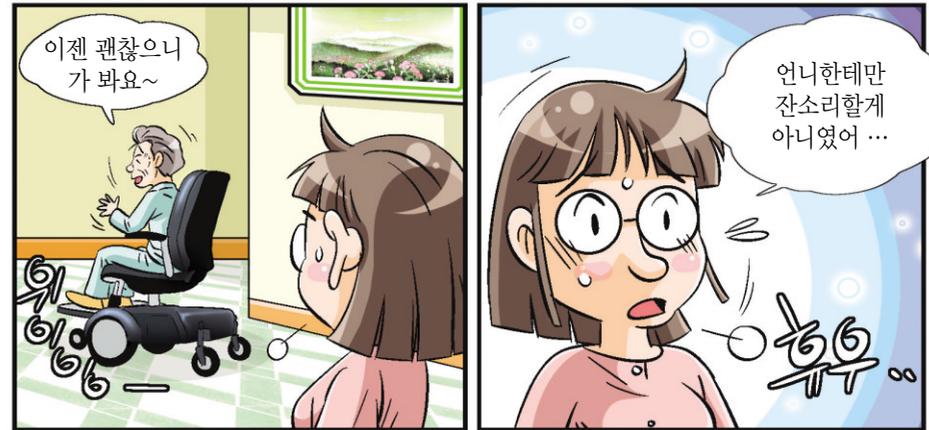
옆으로 지나가는 전동휠체어와 충돌

병원 입구에서 옆을 지나가던 중 환자 전동휠체어에 발목 부위를 부딪히며 부상을 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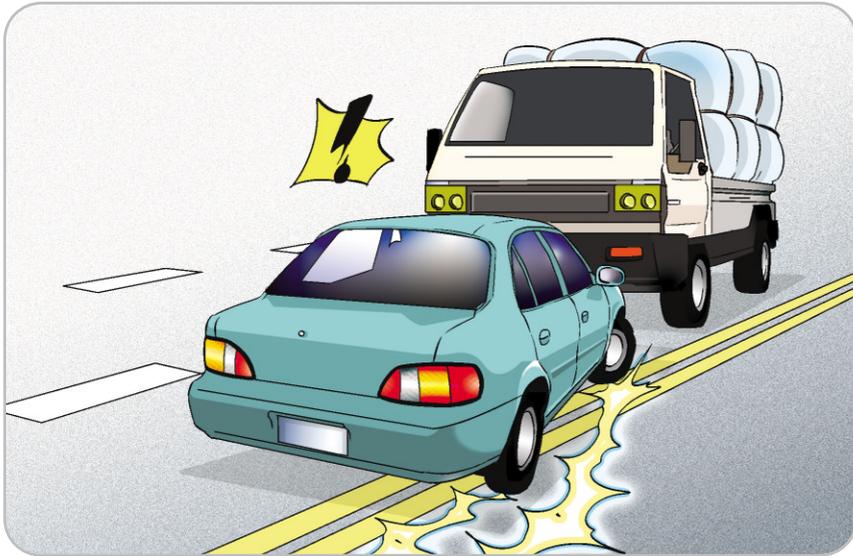
사고예방 대책

- ▶ 전동휠체어가 지나갈 때는 안전거리 유지
- ▶ 사고사례 교육 실시
- ▶ 요양원내 통로에서 뛰지 않기



중대재해 사례

2000년 0월 0일 요양환자 2명을 차에 태워 00병원으로 진료 하러 가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재해예방 대책

- ▶ 교통신호, 교통법규, 안전속도 준수
- ▶ 좌석 안전벨트 착용
- ▶ 눈길, 빗길 서행운전

중대재해 사례

2000년 0월 0일 노노케어 파견을 위해 조회를 마치고 복지관에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더 넘어져 사망



재해예방 대책

- ▶ 계단 이동 시에는 난간을 잡고 오르내림
- ▶ 계단 이동 시에는 급하게 뛰지않고 전방 확인 철저
- ▶ 계단에 넘어짐 주의 경고표시 부착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

참 좋은 집

이 곳에서는 환자들의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박재성 목사는 항상 어르신들과 함께 하며 불편한 점은 없는가 살피는 것이 주요 일과이다.

“어르신들은 아이와 같아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이동할 때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방에서 **마루나 목욕탕으로 이어지는 핸드레일을 설치**했으며, 목욕탕의 경우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타일은 물론 약품 처리까지 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환자를 목욕을 시킬 경우 미끄러짐을 주의하는 것은 물론 환자 몸을 들어 올릴 경우 허리 쪽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자세를 취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라며 안전관리와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곳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이동에 관한 보조 도구들을 사용하게 된다. 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옮기다가 침대에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보호사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보호기관 밖에 설 수 있는 조그마한 정자와 함께 화단을 꾸며 평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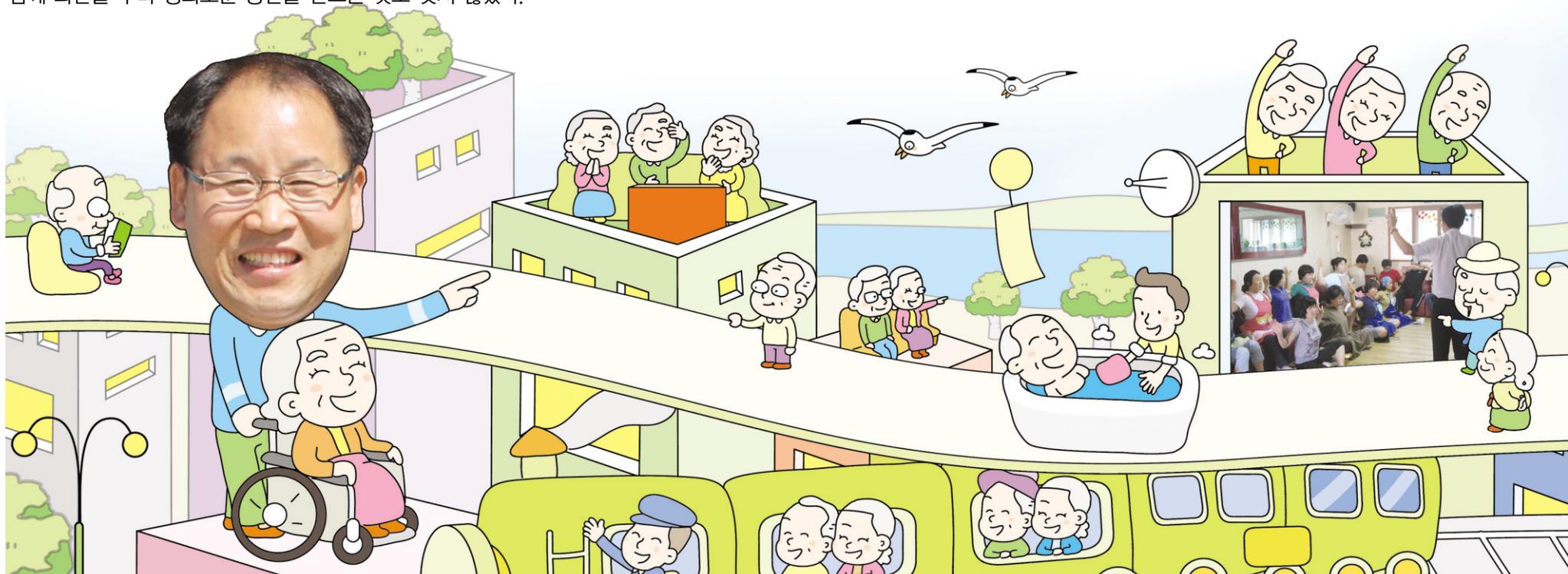
박 목사는 또 참 좋은 집이란 명칭에 걸맞게 보호사들의 안전과 건강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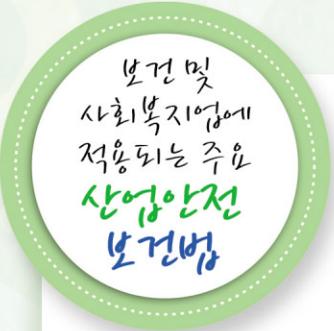
“목욕시키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마음이 따뜻한 보호사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 손목은 물론 허리, 등에 부담이 가서 아픈 직원들이 많습니다. 되도록 일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서 해주는 근골격계 교육이 직원들의 건강을 챙겨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많이 미안하고 아쉽다는 박 목사. 하지만 말과는 달리 부족한 예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직원들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가구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적외선 물리치료기**. 직원들이 아픈 곳을 치료하는 한편 조금이라도 **실 수 있도록** **윗 층 한 공간을 마련해 치료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또 직원들의 정서도 고려해 집 벽에 벽화를 그려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몄다.

몸도 마음도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생활하고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 일 속에서 새로운 평화를 얻으며 일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곳, 참 좋은 집이다.

글·신종섭 기자 / 일러스트 유재영 작가





1 | 산업재해발생 기록 보고 등 (제10조) |

- ① 산업재해(사망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재해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재발 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규칙 제4조의 2 [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 | |
|------------------------|------------------|
|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4. 재해재발 방지계획 |

2 |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1조) |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등 (제12조)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 안전조치 (제23조) |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 | 보건조치 (제24조) |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며 발생하는 건강장해

※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6 | 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5조) |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제41조)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8 | 작업환경측정 (제42조)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 건강진단 (제43조)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45조)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법령은 고용노동부·검찰 합동점검 시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주요 위반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사업주는 [영 별표 1]에서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안전 - 체크리스트

- ▶ 화장실, 욕실 바닥에서의 미끄럼사고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 ▶ 바닥의 물기는 즉시 제거하는가?
- ▶ 환자로부터 질병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는가?
- ▶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가?
- ▶ 환자를 들어 옮기기전, 먼저 옮길 장소와 방법을 정하는가?
- ▶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곧게 한 상태에서 손과 다리의 근육을 사용하여 환자의 몸에 최대한 근접해서 들기작업을 하는가?
- ▶ 침착한 자세로 서서히 들어 올리는가?
- ▶ 환자 이송 시 2~3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는가?
- ▶ 환자 이송 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환자 이송카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가?
- ▶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을 최소화하는가?
- ▶ 작업 전·중·후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가?
-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가?

나의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

목운동



양손을 깎지 껴 아래로 지긋이 누른다



엄지손가락을 턱에 대고 위로 천천히 민다



머리에 손을 얹은 후 옆으로 천천히 당긴다

어깨운동



양쪽 어깨를 위로 지긋이 올렸다가 내린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어깨 관절을 돌린다



팔꿈치를 몸 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팔목운동



손가락을 깎지 끼고 손과 손목을 돌린다



다섯 손가락을 짝 폼다 구부렸다를 반복한다



한쪽 손은 뒤로 젖히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허리운동



양손을 깎지 끼고 머리 위로 천천히 뻗는다



등 뒤로 깎지 끼고 팔을 위로 올린다



다리를 꼬고 앉아 허리를 비트는

